



교육감 규정

번호: A-450

제목: 비자발적 전학 절차

항목: 학생

발행: 2026 년 6 월 18 일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2011 년 1 월 20 일자 교육감 규정 A-450 를 대체합니다.

변경 내용:

- 학생 정학 보로 디렉터는 학교 문화 및 학풍(School Culture and Climate) 담당실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로 대체합니다.

섹션 I. 서문

- 학생이 정학 처분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할 경우 정학 대신 비자발적 전학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해당 학생의 품행이 다른 학교 배치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면 추가 대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학교 안전 요원의 개인 및 학생들의 금속 탐지 검색에 대한 조항을 삭제합니다.

섹션 II. 예방 절차

- 학교 직원은 비자발적인 전학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분명히 합니다.
- 자발적 전학 절차에 관한 섹션을 섹션 III의 논의 부분, 학교장 컨퍼런스 후 실행할 수 있는 조치 섹션으로 옮깁니다).

섹션 III. 학교장 컨퍼런스

- 학교장이 반드시 학교장 컨퍼런스 일정 전에 학생 정학 보로 디렉터와 논의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합니다.
- 학교장 컨퍼런스는 대면 또는 교육청 인증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학부모가 전학에 동의하였다면, 학교 등록 담당실에서 해당 학생을 위한 다른 학교를 찾아주도록 합니다.
- 전학이 추천된 경우, 학교장은 학생의 필요를 더욱 잘 충족할 수 있는 학교 종류에 대한 추천을 포함할 것이 요구됩니다.

섹션 IV.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결정

- 이그제큐티브 디렉터가 전학 추천에 동의하면, 이그제큐티브 디렉터가 학생 정학 담당실과 협의하여 함께 심의 요구 권리에 관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통지문 내용을 갱신합니다.
-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요구합니다.
- 심의는 온라인 실시가 허용되거나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 학부모 불참 시 심의는 3 수업일 내에 다시 잡힐 수 있습니다.
- 수석 디렉터의 심의 후 결정 발표가 학교 수업일 일 기준 10일에서 5일로 단축되었습니다.
- 학생 등록 담당실이 수퍼인텐던트와 논의하여 적절한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상황에 따라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재량으로 전학 시행 날짜를 결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섹션 V. 이의제기 상고

- 이의제기 상고 절차 진행 중 학생의 비자발적 전학과 관련하여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감의 임시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교육감 규정

번호: A-450

제목: 비자발적 전학 절차

항목: 학생

발행: 2026 년 6 월 18 일

요약

본 규정서는 유치원-12 학년 사이의 일반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비자발적 전학을 관장합니다. 본 규정은 2011 년 1 월 20 일자 교육감 규정 A-450 비자발적 전학 절차를 대체합니다.

I. 머리말

본 규정은 뉴욕주 교육법 섹션 3214(5)에 따라 일반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비자발적 전학 실시에 관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교육감 규정 A-443 및 특수교육 표준 운영 절차(SOPM)에 근거하여 훈육의 목적으로 장애학생으로 간주되는 학생 포함)은 비자발적으로 전학 시켜서는 안됩니다. 장애학생 역시 학교 배정의 변경으로 혜택을 볼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IEP 회의 일정이 잡혀야만 합니다.

적절한 중재 시행 후에도 학생의 행동이나 사회-정서적 웰빙 및/또는 학업기록 등으로 볼 때 이 학생이 전학이나 다른 장소에서의 적절한 교육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은 본 규정에 의거하여 비자발적 전학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교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알림: 학생이 규율 규정과 교육감 규정 A-443 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정학 처분을 받을 만한 비행을 저질렀다면, 정학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비자발적 전학은 정학을 대신하는 조치가 아니라, 다른 학교로 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비추어지는 행동에 대한 추가 대응조치로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II. 예방 절차

A. 학교에서의 방법

최상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품행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와 지원방법을 수립하고 활용하는 것은 교직원의 책임입니다. 학생의 품행 및/또는 학업 기록이 학교 생활의 적응에 문제를 보일 경우, 교직원은 학생의 요구에 대처할 계획 수립 및 중재 방법을 모색하고 학생 및 학생의 학부모와 함께 대안에 관해 논의하여야 합니다.¹ 이러한 계획에는 대안 교재 활용 및/또는 접근, 학급 관리 대안 기술 활용, 중재 서비스, 학급 배정 변경, 가이드선 지원 및/또는 개인과 가족 상황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예방 노력들은 학생의 전자 기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예방 노력에는, 특수교육 위원회에 평가나 추가 검사 의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B. 비자발적 전학 절차

비자발적 전학 절차가 계류 중인 동안, 학생은 반드시 교육감 규정 A-443에 따라 정학 처분을 받아 다른 곳에서 학업 하도록 지시 받거나, 학부모가 전학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재학 중인 학교에 반드시 계속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III. 학교장 컨퍼런스

학생의 학교 적응 지원 노력이 실패하였거나, 학생이 전학 혹은 타교에서의 적절한 교육으로부터 더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학교장이 판단할 경우, 학교장은 학부모와 컨퍼런스를 잡아 전학 가능성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습니다.

A. 통지

1. 학교장/대리인은 학생의 전학 추천이 고려되고 있음을 서술한 통지문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합니다(통지문 템플릿은 다음 링크에서 보십시오: <https://www.schools.nyc.gov/about-us/policies/chancellors-regulations/frequently-used-documents>).
2. 이 통지문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1) 학교장과 전학에 관하여 논의할 날짜, 시간 및 장소, (2) 학부모 및 학생은 변호사 또는 그들이 선택한 개인을 동반할 권리가 있음, (3) 학부모는 컨퍼런스 이전에 학생 기록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 (4) 학부모 선호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 학부모는 컨퍼런스 날짜 이전에

¹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학부모"란 용어는, 학생의 부모(들), 또는 보호자(들), 또는 학생과 부모 관계 또는 법적 보호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기관, 혹은 그 밖에 학부모가 부모역할을 대신하도록 지명한 사람(*loco parentis*) 또는 교육감 규정 A-101에 달리 지정된 사람, 또는 학생이 18세 이상이거나 독립한 미성년자일 경우 학생 본인을 말합니다.

학교장에게 연락하여 통역을 요청하거나, 본인이 컨퍼런스에 직접 통역을 대동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B. 학교장 컨퍼런스

1. 학교장 컨퍼런스는 학생 전학 고려 결정에 관련된 사실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컨퍼런스는 학생의 학업과 행동 관련 필요 및 이런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에 활용되었던 조치 및 방법들에 관해 논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2. 학교장은 반드시 컨퍼런스를 실시해야 합니다. 컨퍼런스는 대면 또는 교육청 인증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학부모가 연기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즉각 컨퍼런스 날짜를 재조정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퍼런스의 두번째 재조정 요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공지가 이루어진 후에도 학생 및 학부모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그대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결정 내용에 학생과 학부모의 참석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노력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공지한 날짜에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다는 것과 결정된 사항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통지 받게 됩니다.
3. 학생 및 학부모는 변호사 또는 기타 컨퍼런스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동반하고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학생을 잘 아는 학교 관계자에게 컨퍼런스 참석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는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가 아닌 안내 절차이며, 적대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합니다. 변호사 또는 학생 대변인은 본 컨퍼런스의 비공식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학부모 선호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학부모는 컨퍼런스 날짜 전에 학교장에게 연락하여 교육청에 통역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줄 통역을 컨퍼런스에 동반하고 참석할 수 있습니다.
5. 학부모 요청이 있으면 학교장은 학생 기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6. 컨퍼런스 후:
 - a. 학부모가 학생의 전학에 동의할 경우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 이 학생이 전학 갈 학교를 정할 것입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전학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아래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비자발적 전학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 b. 학교장이 전학이 타당하지 않다고 믿는다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전략 추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면 통지가 5 일 이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 c. 수퍼인텐던트/대리인과의 컨설팅 후 학생이 전학 또는 타교에서의 적절한 교육으로부터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학교장이 결정을 내린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오(5) 수업일 이내에 학교 문화 및 학풍 담당실(School Culture and Climate)의 이그제큐티브 디렉터("이그제큐티브 디렉터")나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OSYD")에서 지정한 후임자에게 서면으로 전학 추천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학교장 추천서에는 전학의 필요성을 설명할 행동 및/또는 학업적 어려움과 이전에 고려했던 대안 조치 및 학생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해 취했던 조치에 관한 설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교장은 학생의 필요를 더욱 잘 충족할 수 있는 유형의 학교들의 추천서도 포함해야 합니다. 학교장 추천서 사본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될 것입니다(추천서 템플릿 참조: <https://www.schools.nyc.gov/about-us/policies/chancellors-regulations/frequently-used-documents>).

IV. 이그제큐티브 디렉터의 결정

A. 사전 책임

학교장으로부터 전학 추천서를 받은 후,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는:

1. 비자발적 전학이 적절하지 않은지를 결정하고 학생을 대신하여 학교장과 학부모에게 추가적인 학교 차원의 노력에 대해 공지합니다.
2. 고려한 바에 관한 학교장의 추천을 수용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학이 제안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B. 통지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는 학생 정학 담당실 또는 그 후임과 협의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의 요청 권리를 알리는 통지문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 통지문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통지문 템플릿 참조: <https://www.schools.nyc.gov/about-us/policies/chancellors-regulations/frequently-used-documents>).

1. 이런 전학을 고려하게 된 상세 이유.
2. 학생과 학부모가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십(10)일 있다는 내용.
3. 만약 심의가 요청되면, 심의 진행을 위한 날짜, 시간 및 장소가 정해질 것이며 제안된 전학은 서면으로 심의 후 결정이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한 즉각적인 전학은 유예될 것이라는 내용.

그러나 학부모가 전학에 즉각 동의하였다고 해도, 이것이 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만약 학부모가 십(10)일 이내에 심의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더 빠른 날짜에 학부모가 전학을 시키도록 동의하지 않는 한, 제안된 전학은 십(10)일이 지난 후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내용.
 5. 심의에 변호사를 동반할 수 있는 권리 공지, 학생과 학부모는 증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권리와 학생을 대변할 증인과 증거를 제출하고 심의 담당관에게 증인의 소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
 6.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관 목록.
 7. 학부모 선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 직접 통역을 동반하거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통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
- 만약 학부모가 이의제기를 요청하지 않고 십(10)일이 지났거나 학부모가 더 빨리 전학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면,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는 보로 등록 담당 수석 디렉터/대리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학교 배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학생 정학 담당 보로 디렉터는 전출 및 전입 학교 교장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의 전학 사실과 전학 날짜를 알리는 통지문을 전할 것입니다. 해당 학교는 반드시 학생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C. 심의

1. 학부모가 심의를 요청할 경우,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는 신속하게 심의 담당실과 협의하여 심의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심의는 온라인으로 실시해도 되고,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심의 실시
 - a. 심의는 학교장 또는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는 한 실시되지 않습니다.
 - b. 연기 요청이 있거나 학부모 불참 시, 심의 담당실에서는 삼(3) 수업일 내 재심의가 시행되도록 일정을 다시 잡을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의 두 번째 재조정 요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c. 재조정된 심의일에 학부모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재조정이 수용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궐석 심의로 진행될 것입니다. 궐석 심의로 진행된다면, 심의 담당관은 학부모와 학생의 참석을 위해 학교에서 기울인 노력을 설명하고 심의를 진행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공지한 날짜에 심의가 진행되었다는 것과 결정된 사항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통지 받게 됩니다.

- d. 교직원들은 학생이 전학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거나 다른 학교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e. 교직원들과 학부모는 목격자를 참석 시키고 질문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f. 심의 담당관은 선서를 진행하고 참여하길 주저하는 증인에게 소환장을 발송할 권한이 있으며, 소환장 발송 전 관련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할 재량이 있습니다. 교직원 또는 전학하여야 하는 학생의 학부모 중 누구나 심의 담당관에 연락하여 증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직원 또는 학생에게 발급하는 소환장은 교직원이 전할 것입니다. 학생 증인들은 본인이 소환 되었거나 참석에 동의하여 증언을하기로 결정하였는지에 관계 없이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참석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g. 이의제기는 테이프 녹음 또는 속기록의 형태로 보존될 것입니다. 학부모의 요청이 있으면 테이프의 복사본이나 속기록 사본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D. 결정

1. 심의일로부터 오(5) 수업일 이내에,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는 반드시 본인의 결정과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한 통지문을 학교장과 학부모에게 보내야 합니다.
2. 만약 이그제큐티브 디렉터가 전학 추천을 거부하면,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에서 제공해야 할 학업 및 지도 교육에 관한 내용을 결정 통지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3. 이그제큐티브 디렉터가 전학 추천을 승인하면 학생 등록 담당실은 수퍼인텐던트와 협의하여 적절한 학교 배정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는 학생이 전학할 학교와 전학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 등의 구체 정보를 반드시 통지문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당 학교는 반드시 학생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학 갈 학교의 교장에게도 반드시 전학 통지문을 보내야합니다.
4.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는 본인 재량으로 전학을 둘러싼 상황에 맞춰 전학 효력 발생일을 결정합니다. 가령, 해당되는 경우 특정 학기나 사이클이 끝날 무렵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은 전학 효력일까지 현재 학교에 계속해서 다니게 됩니다.

5. 졸업장을 취득할 수 없는(예, 풀타임 GED 프로그램) 학교나 파트 타임 프로그램으로의 비자발적 전학은 학생의 연령에 관계 없이 추천하지 않고 권장하지 않도록 합니다.
6. 또한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통지문에서는 이의제기 상고 요청 권리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V. 이의제기 상고

이의제기 상고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교육감에게 전달됩니다 ².

결정에 관한 이의제기는 반드시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학교 수업일 기준 십(10)일 내 또는 심의 테이프 복사본이나 사본을 받은 후 학교 수업일 기준 십(10)일 내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의제기 상고가 계류 중이어도 전학은 진행됩니다.

VI. 문의

본 규정 관련 문의:

Office of Safety and Youth Development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 Room 218
New York, NY 10007
전화번호: 212-374-6784
팩스: 212-374-5751

Office of Legal Services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 Room 308
New York, NY 10007
전화번호: 212-374-6888
팩스: 212-374-5596

²교육감에게 요청하는 이의제기 상고는 동시에 법률 서비스 담당실(Office of Legal Services), Room 308, 52 Chambers Street, New York, NY 10007로도 전달될 것입니다.